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안)에 대한 협회의견(자조금관련)

◇…본회는 자조금 조성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지난 5월 7일 자조금제도 시행령(안)에 대한 협회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다음은 자조금과 관련, 협회 안으로 제출한 시행령(안) 전문이다.<편집자 주>……………◇

정 부 안	협 회 안	검 토 의 견
제23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은 업종별 생산자단체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생산자단체는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관리·운영 등에 관한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은 특정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단체가 거출한 자금과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조성한다. (2) 자조금은 도축장, 도계장, 우유 및 계란처리장 등 농산물처리장과 배합사료공장 등에서 거출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가 조성하는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조성기준, 운용, 관리, 집행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수산물의 범위)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돼지, 닭, 우유 2.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	자조금은 그 집단의 공동이익, 즉 집단의 한 구성원 또는 일부의 힘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산업전체의 문제를 위하여 조성·사용하는 자금으로 이러한 자금은 무임승차가 없이 수혜자가 모두 참여하면서 수익비례의 원칙에 의해 부과되어 생산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액을 부과하며, 조성이 용이하고 공평해야 함.
제24조(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수산물의 범위)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돼지, 닭, 우유 2.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	제24조(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수산물의 범위) 법 제13조 제2항의………같다. 1. 우유 2. 돼지 3. 닭 4.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 제25조(보조금의 지급기준)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생산자단체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2) 생산자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조금의 사용목적 2. 자조금의 조성액 및 사용액 3. 자조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내역 4. 기타 필요한 사항 (3) 농림수산부장관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제24조의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단체가 농어민으로부터 조성하여 자조금을 매년 적립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육조절사업 2. 수매비축 및 판매사업 3.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기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된 보조금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좌 동) (2) (좌 동) (3) 농림수산부장관이 ……………… 있다. 1. 축산물 소비촉진사업 2. 수매비축사업 3. 조사연구사업 4.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5. 신제품 개발사업 6. 정책개발사업 7. 기타 자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삭제